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05

제출연월일: 2022. 9.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다. 지원 방법(안 제4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도시락 지원 등

라. 지원 안내 및 신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안 제9조)

사. 아동급식지킴이 운영(안 제10조)

아. 지도·감독(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아동복지법」 제35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다양한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방법 구체화(여성가족과-30603호, 2022. 7. 26.)

라. 입법예고: 2022. 7. 18. ~ 8. 8.(22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4.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비슷하게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

4. 담당 공무원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

2. 제3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영양·위생 등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청(추천)자</td><td>성명</td><td>아동관의 관계</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td><td>전화번호(휴대폰)</td></tr>
<tr><td rowspan="3">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td><td>성명</td><td>관계</td><td>동거여부</td></tr>
<tr><td>직업(구체적으로)</td><td>월수입(평균)</td><td>전화번호(휴대폰)</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 rowspan="3">대상아동 1</td><td>성명</td><td>성별 [ ] 남 [ ] 여</td><td>[ ]취학 [ ]미취학</td></tr>
<tr><td colspan="3">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td></tr>
<tr><td colspan="2">주소</td><td>주민등록번호
(세)</td></tr>
<tr><td rowspan="3">대상아동 2</td><td>성명</td><td>성별 [ ] 남 [ ] 여</td><td>[ ] 취학 [ ]미취학</td></tr>
<tr><td colspan="3">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td></tr>
<tr><td colspan="2">주소</td><td>주민등록번호
(세)</td></tr>
<tr><td rowspan="2">신청
(추천)
의견</td><td>신청(추천)사유</td><td colspan="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td></tr>
<tr><td>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td><td colspan="3">※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td></tr>
<tr><td></td><td>희망 급식 방법</td><td>[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____)</td><td>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td><td>[ ] 사용
[ ] 미사용</td></tr>
</table>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 1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___)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지원결정 대상 2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___)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부적합 대상	성명	생년월일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근 거 법 규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아동급식 지원 경비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3. 작성자

○ 소　속: 가족복지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윤경빈

○ 연락처: (052)290-4933